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31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31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39조) ..	3
※ 참고자료	8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221963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6. 30.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9조).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39조)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u>300만원을 넘으면</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분할 납부) ----- <u>300만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0만원)</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교통유발부담금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임.

현행법 제36조²⁾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현재 55개 지자체)³⁾의 시장이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 부과함.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구 분	내 용
목적	교통유발 원인자(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 확보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부과주체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 건축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그 외 교통량이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시설물 * 공동·분할 소유 시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되, 160㎡ 미만인 경우 면제
산정기준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시행규칙(별표 3·4)에 따른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는 조례로 상향(100%) 또는 하향(-50%) 가능 * 주차장 유료화, 차량부제 등 법령상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부담금 경감
납부시기	전년도 8.1부터 해당연도 7.31까지 1년분을 10.16부터 10.31까지 납부, 3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부담금 용도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연구 등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보유지분(160㎡ 미만 보유 시 면제), 시설물의 종류⁴⁾ 등에 따라 1건당 적게는 50만원 이하부터 많게는 10억원 이상까지 부과되고 있음.

3)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84개 시·군(8개 특·광역시, 72개 시, 4개 군) 중 인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55개 지자체).(참고1. 참조)

4) 시설물 보유면적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담금 산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3조의3)

<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

구 간	부과건수		구간별 비중		비 고
합 계	356,692		100.00%		
10억원 초과	32	16,553	0.01%	4.6%	(현행) 3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 (개정안) 현행유지하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면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5억원 초과 ~ 10억원	55		0.02%		
1억원 초과 ~5억원	616		0.17%		
5천만원 초과 ~ 1억원	968		0.27%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4,351		1.22%		
300만원 초과 ~1천만원	10,531		2.95%		
50만원 초과 ~ 300만원	85,164		23.9%		
50만원 이하	254,975		71.5%		

자료 : 국토교통부

현행법상 부과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의 경영상황이나 부담능력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액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영업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될 경우, 비교적 소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고 가용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부과현황을 보면, 현행 분할납부 기준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과건수는 총 1만 6,553건으로 전체의 4.6%인 반면,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구간인 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부과건수는 8만 5,164건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 규모가 분할납부 기준에 미달하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상당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분할납부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분할납부 하향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상의 구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상한이 400억원~1,800억원인 기업, 이 중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상한이 15억원~140억원인 기업,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상한이 5인~10인인 소기업이므로⁵⁾ 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에 비하여 사업규모와 부담능력이 상당히 큰 기업도 포함됨.

5) 근거 규정 : 참고2.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소상공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하향 적용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낮추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 및 차등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분할납부 금액 기준을 하향 적용하는 것은 동의함.

다만, 경기에 따른 자금 유동성이 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매출 및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현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16.07.28)

○ 도시교통정비지역 84개소

시·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지역 ^{주)} (55개소)	그 외(29개소)
특광역시 (8)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28)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동두천시, 과천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강원(5)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충북(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충남(8)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7)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전남(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경북(8)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김천시, 영천시, 칠곡군
경남(8)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주) 인구(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동지역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

자료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 ④ (생략)